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의무예치금액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 함 (안 제3조)
- 나. 기금 용도 확대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대응, 조사·연구, 상담활동 지원규정을 신설 함 (안 제5조)

- 다.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 부서별로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안 제7조)
- 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금고”로 한다.

제5조에서 제15호, 제16호,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제9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금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u>운용·관리</u>) <u>인천광역시</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누계잔액</u>(매년 적립해야 될 <u>법정적립액</u>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5조제2항에 따라 <u>법정적립액</u>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u>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u>운용·관리</u>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u>운용·관리</u>)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u>법정적립액</u>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u>인천광역시금고</u>(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u>운용·관리</u>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u>운용·관리</u>)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인천광역시</u>(이하 “시”라 한다) <u>금고</u>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u>운용·관리</u>) ① ----- ----- ----- -- <u>금고</u>----- -----

현행	개정안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생략) 1. ~ 14.(생략) <u><신설></u>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14.(현행과 같음) <u>1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u> <u>1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u> <u>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u>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u>시장</u>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략)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u>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회계공무원) ① (생략) 1. 기금운용관 : 소방안전본부장	제7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본부장

현행	개정안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 (생략)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생략) 1. ~ 3.(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장·국장, 시의회 재난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기금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안전본부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

현행	개정안
<u>록 하여야 한다.</u> ④ (생략) <u><신설></u>	<u>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기금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비용 발생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금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요인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요가 나타나는 사항으로 한시적이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